

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38,111,480	310,143,344
일반회계	9,288,291,790	278,648,754
특별회계	1,049,819,690	31,494,591
기타특별회계	1,049,819,690	31,494,59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00,000	10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4,896,851	1,046,906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00,000	20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7,028,452	17,010,85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20,000	36,6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000,000	180,000
소방특별회계	430,375,987	12,911,28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98,400	2,95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1,280,95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2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